

## 생활 속 법률이야기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회사의 토마토 원종을 취득하여 새로운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영업 비밀의 취득’에 해당할까요?

### 〈사건의 개요〉

#### 원심판결 기초사실

1. 외국 기업인 원고 회사 A는 2009년 A회사에서 개발한 토마토 종자 a에 대한 품종판매희고를 한 뒤 현재까지 국내에서 a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한편, 피고회사 B는 2015년 토마토 종자인 b에 대한 품종판매희고를 한 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다.
2. 원고가 a 품종, b 품종과 국내시판 중인 다른 10개의 토마토 품종, 합계 12개 품종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였다.
3. 검사결과, a품종과 b품종의 유전자형이 100%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 원심판결 판단 요소

1. b원종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가 자신이 취득한 b원종을 사용하여 a종자를 생산한 것과 관련하여 종자 생산 당시 b원종에 대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

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 원심 결론

피고는 원종을 각 생산, 판매, 양도, 수출,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점, 지점, 사무소, 대리점에 보관된 종자 및 각 원종을 폐기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의 재점

1. ‘영업 비밀’ 및 영업 비밀의 ‘취득’의 의미
2.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물건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대법원 판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 결론

(1) 다른 회사의 토마토 원종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2) 부정한 수단으로 원종을 취득한다면 ‘영업 비밀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회사의 원종을 취득하여 이것을 통해 새로운 종자를 생산한다면, 이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